

명예총장 규정

제정 2009. 9.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명예총장 추대절차와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명예총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본교의 발전과 교육연구분야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추대절차) 명예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4조(임기) 명예총장의 임기는 5년 이내로 한다. 단, 본교 설립자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할 경우에는 임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기능) 명예총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대학발전에 관련한 총장에 대한 자문과 조언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업무

제6조(예우) ① 명예총장에게는 본교의 제의식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총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특강을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 수당, 여비, 교통비 등 적절한 실비변상적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에 의거 총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 이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전재욱 명예총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추대된 것으로 본다.